

의안번호	2200067
의 퇴 인	박충권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5.
추계번호	24F04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4,821억원, 2031년 5,590억원 등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3조 1,185억원(연평균 5,19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(안 제24조 제1항제2호) ¹⁾	-4,821	-4,965	-5,115	-5,268	-5,427	-5,590	-31,185	-5,198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제1항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4조제1항제2호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 기준에 따라 집계함
 - 2025~2030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6~2031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6~2031년간 발생한다고 가정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기획재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, 향후 세액공제액이 산업은행의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상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－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상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4년까지 존재하여 이후 기간은 2024년의 증감률이 유지된다고 가정
 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하여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고 가정
 - 동 조항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20%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이를 고려하여 세수효과 추정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연장될 경우,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 개요)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-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‘반도체, 배터리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’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 등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~25%의 공제율을 적용하며,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(4%)를 적용함
 - －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당기분 12~13%p, 증가분 1%p 우대
 - － 일반 투자 대비 당기분 14~15%p, 증가분 1%p 우대

[표 2] 기술별 투자세액공제율 차이

(단위: %)

	당기분			증가분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일반기술	1	5	10	3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3
국가전략기술	15	15	25	4

□ (공제실적) 2023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잠정실적은 7,500억원 수준

-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7,483억원, 중견기업 9억원, 중소기업 8억원 등

[표 3]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실적: 2023년(잠정치)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	8	9	7,483	7,500

자료: 기획재정부, ‘국무위원후보자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)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’, 2023.12.

(2) 추계방법

-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에서 집계한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의 설비투자계획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공제액을 전망
 - 산업은행의 「2023년 설비투자계획조사」상 기업규모별 설비투자계획에 따라 향후 투자세액공제액이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 - 단, 동 조사의 설비투자계획은 2024년까지 존재하므로, 2025년 이후 설비투자 증감률은 2024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정
 - ※ 설비투자계획 증감률: ('23년) 대기업 △ 5.3%, 중견기업 9.8%, 중소기업 5.8% ('24년) 대기업 3.0%, 중견기업 4.3%, 중소기업 6.5%
 - 설비투자 시점과 법인세 확정신고와의 시차를 고려하여 t년도 설비투자 증감률을 t+1년도 공제액에 적용하여 추정

[표 4]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중소기업	10	10	11	12	12	13
중견기업	11	11	12	12	13	13
대기업	7,518	7,744	7,976	8,215	8,462	8,715
계	7,538	7,765	7,998	8,239	8,487	8,742

자료: 산업은행, 「2023년 설비투자계획조사」, 2023.12.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세수효과) 현행 및 개정안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의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해당 투자는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하여,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
 - 2025년(징수기준 2026년)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(%): (현행)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공제율 적용: 대기업 3, 중견기업 6, 중소기업 12 (개정안)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적용: 대기업 15, 중견기업 15, 중소기업 25
 - 세수효과 추정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5]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치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투자세액 공제액	현행(A)	1,513	1,558	1,605	1,653	1,703	1,755
	개정안(B)	7,538	7,765	7,998	8,239	8,487	8,742
	차이 (C=B-A)	6,026	6,207	6,393	6,585	6,783	6,987
세수효과 ($C \times [1 - 0.2]^{1)}$)		-4,821	-4,965	-5,115	-5,268	-5,427	-5,590

주: 1) 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의 20%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을 고려한 값임

(3) 추계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4,821억원, 2031년 5,590억원 등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3조 1,185억원(연평균 5,19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(안 제24조 제1항제2호) ¹⁾	-4,821	-4,965	-5,115	-5,268	-5,427	-5,590	-31,185	-5,198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